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3
----------	------

발의연월일 : 2025년 8월 일

발의자 : 강성삼 의원

1. 제안이유

가. 조례에 인용된 다른 조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며,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례명을 정비함
(안 제7조제2항)

-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나.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 (안 제3조, 제7조)

- ‘각종(各種)’ → ‘여러 가지’

- ‘익일(翌日)’ → ‘다음 날’

다. 조문의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하고 어법에 맞게 다듬음 (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하남시의회 조례 제 호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개정”을 “제정·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를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각종”을 “여러 가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치법규의 <u>제·개정</u>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p> <p>2. (생략)</p> <p>3. <u>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u>,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p> <p>4. (생략)</p> <p>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각종</u>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p> <p>3.·4. (생략)</p> <p>제7조(수당) ① (생략)</p> <p>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p> <p>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p>	<p>제3조(자문사항) ① ----- -----.</p> <p>1. ----- <u>제정·개정</u> ----- -----</p> <p>2. (현행과 같음)</p> <p>3. <u>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및</u>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여러 가지</u> -----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당)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하남시 고문 <u>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 례</u>」----- --.</p> <p>③ ----- -----</p>

그 익일에 지급한다.

-- 다음 날-----.